#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 뢰 인	동작신용협동조합장
건 명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83-9 소재 "부동산"
감정서번호	가람 0120-01-0011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안 성 우 산성우

(인)

(서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이용호

								· ·	1º HE				
감	정평가액	일십사억사천이백만	일십사억사천이백만원정 (₩1,442,000,000)										
2	의 뢰 인	동작신용협동 <u>2</u>	감정평?	가목적		공매							
į	채 무 자	-		제 출	처	대한토기	지신탁주	식회사					
	소유자 상업체명)	대한토지신탁	구식회사	기 준 감정 <sup>1</sup> 조		,	시장가치 -						
목록표시 등기사항전부 근 거		부증명서		기준. 2020.0		조사기간 2020.01.06		작성일 2020.01.08					
	공박	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병 평 가	-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	적 또는 수	∸량	단 가		금 액				
감정	토지	7,000	토지			7,000	206,000		1,442,000,000				
평 .			Ol	하	여	백							
가내		,											

심 사 확

용

합계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감정평가사

김 명 종







₩1,442,000,000

## Ι

####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소재 "장계저수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기호	소재지・지번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83-9	7,000	임야	나대지	계획관리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0년 01월 06일임.

####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은 2020년 01월 06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 가. 기준가치

본 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 5. 참고사항

- 가. 본 감정평가는 공매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담보 등의 가치는 시장상황과 평가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본 감정평가서는 담보목적 등 평가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당 법인의 책임은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나. 본 건 토지는 **2013**년 **9**월 안성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득하여 본 허가 승인일로부터 **4**년간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아 기준시점 현재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인 바, 공매 진행시 참고바람.

### II

####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 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n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 · 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 본 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 1) 본 건의 토지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본 건 토지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목공사" 진행한 나대지 상태로서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기본적사항의 확정	Ÿ 대상 부동산의 확정 Ÿ 기준시점의 확정 Ÿ 가격종류의 확정
Û	
처리계획의 수립	Ÿ 사전 조사 계획의 수립 Ÿ 실지 조사 계획의 수립 Ÿ 가격 조사 계획의 수립 Ÿ 감정평가서 작성 계획의 수립
$\Box$	
대상물건의 확인	Ÿ 물적사항 확인 Ÿ 권리상태의 확인 Ÿ 물적불일치 여부의 판단
Û	
자료수집 및 정리	Ÿ 확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Ÿ 요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Ÿ 사례자료의 수집 및 정리
$\hat{\mathbb{T}}$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Ÿ 일반적 요인의 분석 Ÿ 지역적 요인의 분석 Ÿ 개별적 요인의 분석
Û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ÿ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Box$	
감정평가액의 결	경 및 표시

### Ш

###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 1. 인근 지가수준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조건	가격 수준(원/㎡)	비고
계획관리	공업용	세로(가) 기준	200,000 내외	-

#### 2.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한국감정원 제공 감정평가정보체계)

기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기호 기백 지목 이용 나라 도	용도지역	도로	토지면적(㎡)	거래가격	토지단가	거래	건물사용	
기오	지번	시축	이용상황 등	조건	건물면적(㎡)	(천원)	(원/㎡)	시점	승인일
	장계리	OLOL	계획관리	세로	8,000	1 740 400	010.000	MA 11 A1	
а	783-10	임야	공업나지	(가)	-	1,742,400	218,000	`16.11.21	-
의견	변 사례 <b>(a)</b> 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sup>※</sup>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거래조건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전제하였음.

#### 3. 인근 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도로 조건	면적 (㎡)	토지단가 (원/㎡)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b	장계리 593-1	공장 용지	계획관리 공업용	세로 (가)	8,181	238,000	140,800	`17.07.26	법원 경매
С	장계리 <b>783</b> -5	공장 용지	계획관리 공업용	세로 <b>(</b> 가)	8,000	200,000	147,800	`17.11.09	담보
d	장계리 <b>638-4</b>	공장 용지	계획관리 공업용	소로 한면	4,928	230,000	175,300	`19.01.21	법원 경매
e	장계리 <b>783</b> -10	임야	계획관리 공업나지	세로 (가)	8,000	215,000	10,200	`17.09.27	법원 경매

### IV

###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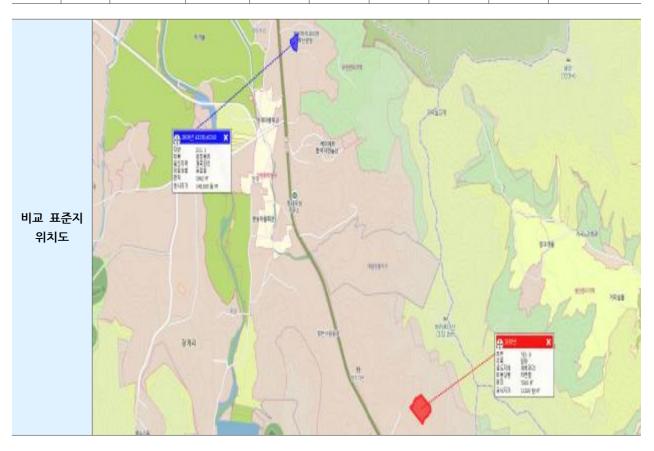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 가. 비교 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로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음.

( 공시기준일 : 2019.01.01 )

본 건	비 교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	용도	도로	형상	공시지가
기 호	표준지	지번	(㎡)		상황	지역	조건	지세	(원/㎡)
1	A	장계리 <b>211</b> -1	1,962	공장 용지	공업용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평지	148,000



####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절차로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본 건	비 교	시 군 구	용도	시점	비고
기 호	표준지	(산 정 기 간)	지역	수정치	
1	A	경기도 안성시 (19.01.01~20.01.06)	계획 관리	3.540% (1.03540)	$2019.01.01 \sim 2019.11.30 : 3.127$ $2019.11.01 \sim 2019.11.30 : 0.325$ $(1 + 0.03127) * (1 + 0.00325 * 37/30)$ $= 1.03540$

<sup>※</sup>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 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 다. 지역요인의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라. 개별요인의 비교

#### n 개별요인의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폭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포장
		계통의 연속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동력자원
히건구기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공업용수
환경조건		공장배수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면적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형상
		고저
		조장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חורו ס ט	זורו	강래의 동향
기타조건	기타	기타

#### n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 건 기 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0.95	0.98	1.00	0.95	0.90	1.00	0.796
결정!	의견			가로조건(계통 등), 행정적조			고통시설과의 기	거리 등 <b>),</b> 획지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 (98두6067(1998.7.10), 92누16300(1993.9.1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매매사례, 평가전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 가) 비교사례의 선정

본 건 기호	표준지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A	b			

#### n 선정 사유

인근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평가가격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건과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평가사례)를 선정하였음.

#### n 선정된 비교사례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도로 조건	면적 (㎡)	토지단가 (원/㎡)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b	장계리 <b>593-1</b>	공장 용지	계획관리 공업용	세로 <b>(</b> 가)	8,181	238,000	140,800	`17.07.26	법원 경매

#### 나) 비교사례 기준가액과 공시지가 기준가액의 격차율 산정

#### n 기호(1)

비교사례	78	사례가격(원/㎡)	시점	지역	개별	산정덕	단가	격차율			
비교표준지	구분	공시지가(원/㎡)	공시지가(원/㎡) 수정		요인 요인		m³)	(①/②)			
b	① 비교사례 기준가액	238,000	1.09131	1.000	0.796	206,	746	1.695			
A	② 공시지가 기준가액	148,000	1.03540	1.000	0.796	121,	978	1.095			
	사정보정	별도의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비교사례로 판단됨.									
	시점수정	경기도 안성시 <b>(</b> 2	경기도 안성시 <b>(2017.07.26~2020.01.06)</b>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함.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비교사례 기준가액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위치하									
산출근거								사의 거리 등 <b>)</b> ,			
	개별요인	_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_	1.00	0.95	0.90	1.00	0.796			

####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비교사례를 종합분석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거래동향, 거래사례, 평가전례, 공시지가의 현실 화정도, 지역의 개발정도 및 주위환경의 변화, 기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 적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본 건 기호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A	1.69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토지 시산가액 = 표준지 공시지가(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기호	비 교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지역	개별	그 밖의	산정단가	시산가액
	표준지	(원/㎡)	수정	요인	요인	요인	(원/㎡)	(원/㎡)
1	A	148,000	1.03540	1.000	0.796	1.69	206,144	206,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 가. 비교사례의 선정

#### n 비교사례 선정 및 그 사유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 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 능한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 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а

#### n 선정된 비교사례

기중	기호 전세시 지목 등도시역 도도	71 🗸	용도지역	도로	토지면적(㎡)	거래가격	토지단가	거래	건물사용
기보		건물면적(㎡)	(천원)	(원/㎡)	시점	승인일			
	장계리	임야	계획관리	세로	8,000	1,742,400	218,000	`16.11.21	
a	783-10	임아	공업나지	(가)	-	1,742,400	218,000	10.11.21	-
의견	변 사례(a)는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 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1.000

####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본 건	비교	시 군 구	용도	시점	비고
기 호	사례	(산 정 기 간)	지역	수정치	
1	a	경기도 안성시 (16.11.21~`20.01.06)	계획 관리	10.934% (1.10934)	$\begin{array}{c} 2016.11.01 \sim 2016.11.30 : 0.309 \\ 2016.12.01 \sim 2016.12.31 : 0.162 \\ 2017.01.01 \sim 2017.12.31 : 3.287 \\ 2018.01.01 \sim 2018.12.31 : 3.457 \\ 2019.01.01 \sim 2019.11.30 : 3.127 \\ 2019.11.01 \sim 2019.11.30 : 0.325 \\ \end{array}$ $(\begin{array}{c} 1 + 0.00309 * 10/30 ) * (\begin{array}{c} 1 + 0.00162 ) \\ * (\begin{array}{c} 1 + 0.03287 ) * (\begin{array}{c} 1 + 0.03457 ) \\ $

<sup>※</sup>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 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음.

####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본 건과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 마. 개별요인 비교

#### n 개별요인의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폭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포장
		계통의 연속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동력자원
히건구기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공업용수
환경조건		공장배수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면적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형상
		고저
		조장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コにしスプ	7151	장래의 동향
기타조건	기타	기타

#### n 개별요인의 비교치

본 건 기 호	비교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0.95	1.00	1.00	1.00	0.90	1.00	0.855
결정9	의견	본 건은 비 <u></u> 함.	교사례 대비 :	· 가로조건 <b>(</b> 계통:	의 연속성 등)	, 행정적조건	(건축허가 득	등)에서 열세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토지 시산가액 = 사례가격(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1	a	218,000	1.000	1.10934	1.000	0.855	206,770	207,000

## V

####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면적 (㎡)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결정된 토지가액 (원)
1	7,000	206,000	207,000	206,000	1,442,000,000
합계	7,000	-	-	-	1,442,000,000

####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토 지	7,000	206,000	1,442,000,000
	합 계	1,44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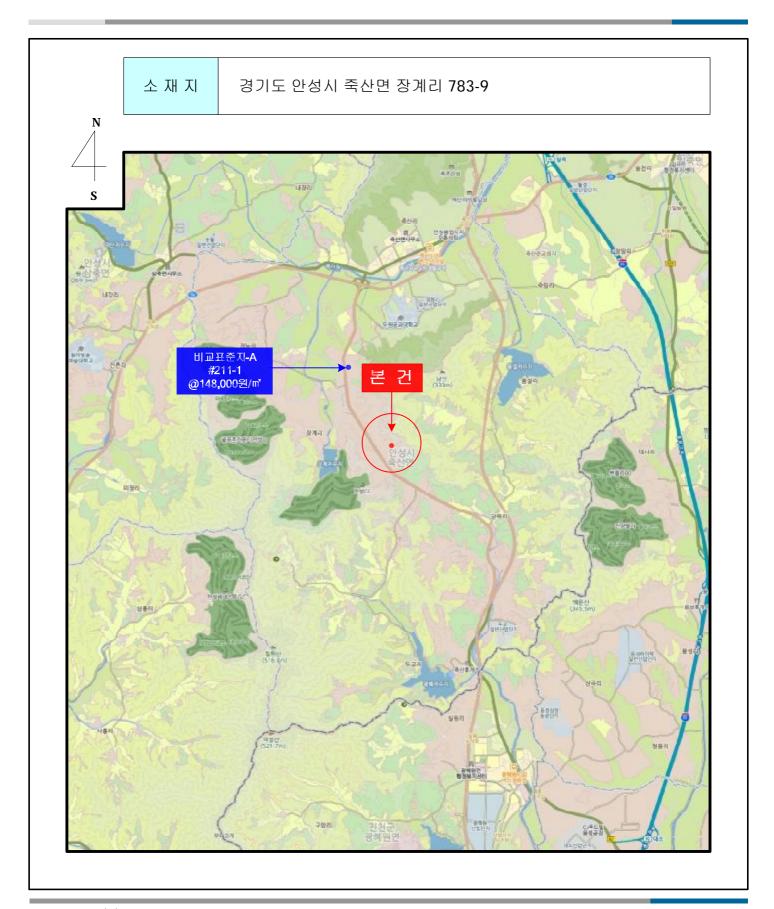
##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공 부	적 사 정	감 정 단 가	평 가 액 금 액	비 고
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83-9	임야	계획관리지역	7,000			1,442,000,000	현황"나대지"
	합 계	I				l	\ 1	,442,000,000	
				0	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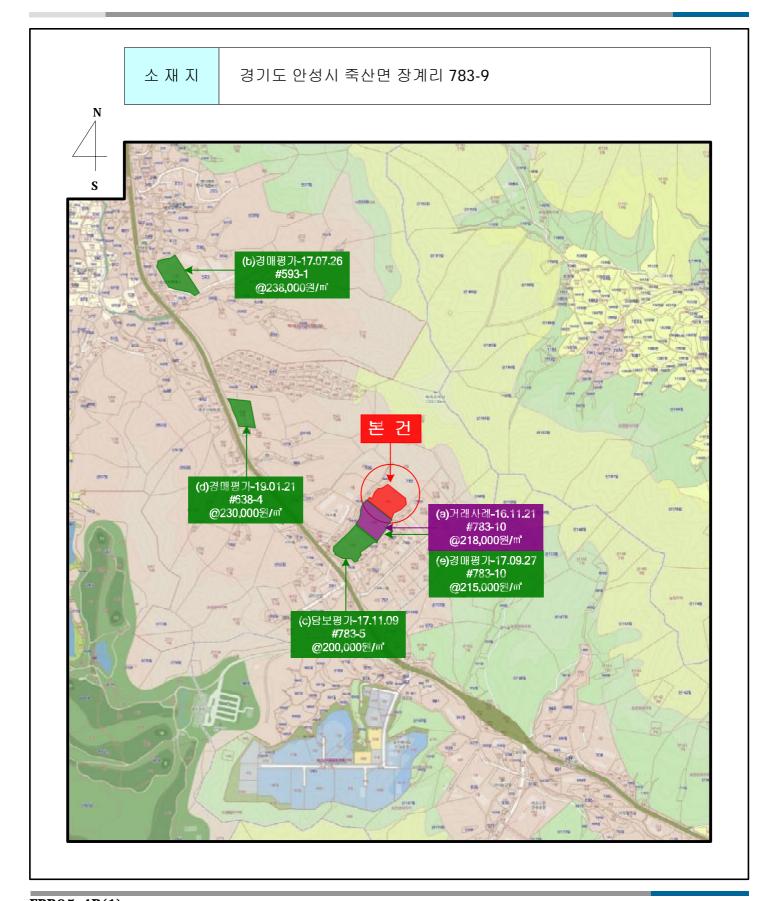
## 토지 입지분석 및 개별요인 분석표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83-9				
지 리 적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본 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소재 "장계저수지" 북동측 원거에 위치하며, 인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접근조건 등 전반적인 주변여건 은 보통임.				
교 통 상 황	본 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 도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됨.				
형 상 , 지 세 및 이용상황	본 건은 남서 하향 완경사지에 축대 조성하여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접면도로상황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 사 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제시외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및 기 타	본 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공장부지로 토목공사 진행한 상태이고 현재 미준 공 상태임.				
주 위 전 경					

## 광 역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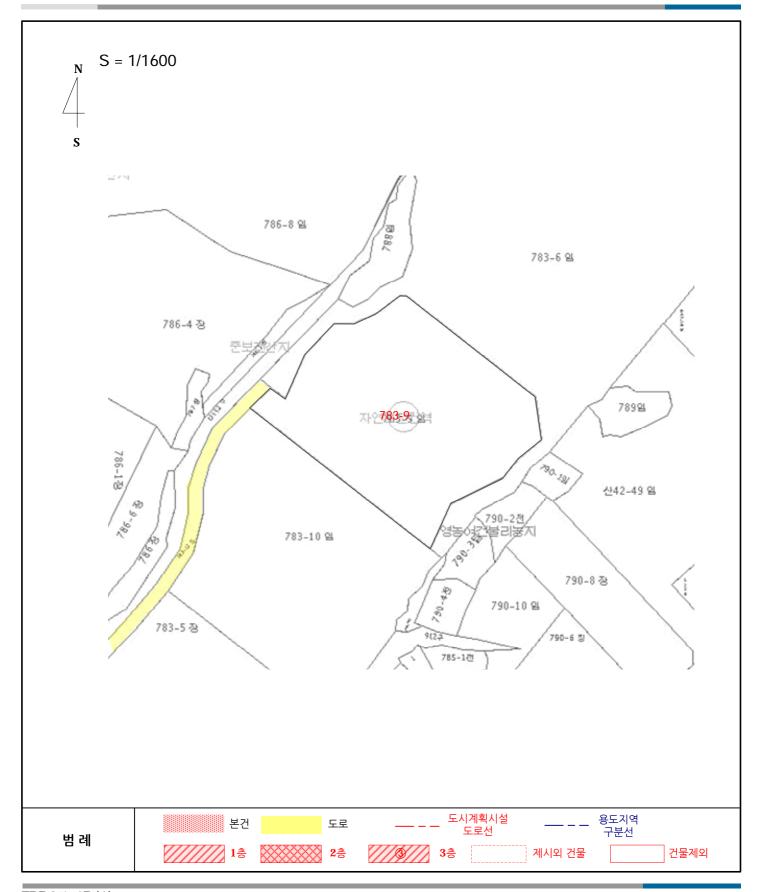


## 위 치 도



지 적 도

기호:( )



## 사 진 용 지



주위환경(1)



주위환경**(2)** 

## 사 진 용 지



본 건 전경(1)



본 건 전경**(2)** - 본 건 진입로

##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우)06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64길 8-9 (양재동, 가람빌딩 4층) E-Mail: kaaram@kapaland.co.kr 홈페이지: http://www.kaaram.com

Tel. 02)556-0048 FAX. 02)553-8998

문서번호: 가람0120-01-00116

시행일자: 2020.01.13

수 신: 동작신용협동조합이사장

참 조:

제 목: 감 정 의 뢰 에 대 한 회 보

선 결		지	
거	일자	시	
접	일자 시간	결	
수	번호	재	
처리과		공 람	
담 당 자		람	

- 1. 우리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워합니다.
- 2. 2020-01-02일자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83-9 소재 "부동산"』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 16조의 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요청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며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2 부 1. 감정평가서 첨 부:

1 부 2. 청 구 서

3. 세 금 계 산 서 1 부 끝.

## (주)가람감정평가법인

## 수수료청구서

평가서번호: 가람 0120-01-00116호

2020.01.13

### 동작신용협동조합이사장 귀하

#### 일백사십칠만팔천사백원정 (\ 1,478,400.-)

**2020.01.02**일자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공매』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관한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 구 내 역 -

	과 목	금 액	비고
	평 가 수 수 료	\ 1,238,880	
실	여 비 토지조사비	98,400	956,000+(442,000,000x8/10,000x0.8)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 타 실 비	2,000 5,000	<b>≒1,238,880</b>
비	소 계	105,400	
	특 별 용 역 비	_	
	공 급 가 액	1,344,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134,400		
	합 계	\ 1,478,400	
	기납부 착수금	_	
	정 산 청 구 액	\ 1,478,400	

#### ※ 송금처 ※

축협 KEB하나은행 170011-51-018164 예금주: (주)가람감정평가법인 219-890023-50904 예금주: (주)가람감정평가법인

-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 번호(0120-01-0011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16조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연락이 안 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0000)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전화: 02)556-0048 팩스: 02)553-8998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07-81-85124